

변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현재 서울 강남구청 등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는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Family ID 및 E-mail 주소 체계를 특허 출원한 인터넷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전자고지서』 송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이 분야도 과세정보의 누출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세 분야에서 Cyber space 활용은 납세자의 편리성이나 과세관청의 능률성에서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나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인 자료유출 및 해킹의 방지책 등도 병행하여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에 따른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과세자료(text file 등)를 디스켓 등 보조매체 형태로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직원만 작업을 수행토록 제한하는 한편 세무종합시스템과 전자고지서 송달시스템 관리 서버의 통합운영 및 자료 제공시 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철저히 징구·관리하고, 제공자료를 본 업무수행 이외에 용도로 사용시 구체적

인 처벌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오늘날 Cyber space의 활용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으며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무역·금융 등 방대한 자료의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더욱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Cyber space의 활용은 이제 선택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점을 지나 필수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의 도도한 물결속에서 지방세분야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행정의 능률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도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하여 납세자에게서도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지방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세정 운영체계를 보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전환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긴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